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4-2-13

규정번호 4-2-13
제정일자 2012.2.6
최근개정 2025.3.31
개정차수 30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전임 및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은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만, 학위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수한 분야와 외국어회화 등 실기 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는 학사학위 소지자)(개정 2019.12.09.)
2.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인
3.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지정형 전임교원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된 전임교원으로 산업체 경력기간 제한 없음
2. 채용형 전임교원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지정형 비전임교원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교원중에서 산업체 경력이 10년이상되어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된자

제4조(직급) 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경력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급은 관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부·학과(전공)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학본부(실·처·단) 및 부속기관, 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조신설 2021.09.13.)

제6조(의무)(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주당책임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행하고 산학협력 관련 교육 및 강의·연구, 학생지도, 학사업무 협조 등을 수행한다. 단, 책임시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03.16.,2023.08.07)

② 산학협력중점교원 중 전임교원의 겸직 및 외부출강 허가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및 사외이사겸직에관한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04.26., 2019.07.30., 2020.08.31)

제7조(역할)(조번호변경 2021.09.13.)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한다.

1. 산학협력 및 취업제고 활동을 기준으로 한 학생상담(본교 평생상담지도 기준)과 취업지원활동 참여
2.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 취업채용 활성화
3. 산학협력활동 : 현장실습학기제, 취업연계, 학생창업지도, 산학협력업체(가족회사 포함) 유치 및 관리, 기술·경영자문 및 산업체 방문, 기술이전, 특허등록, 교원 창업,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및 참여, 중소기업애로기술지도, 학과-산업체 장비공용 활용 등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산학부문에 관한 내용을 포함(개정 2021.08.18.)
4. 학과별 산학협력 지원 및 기타 산학협력 활동

제8조(임용절차)(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임용은 법인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경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임용 및 전형은 우리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임용 전형지침에 의한다.

③ 지정형 전임교원 및 지정형 비전임교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장, 주임교수 또는 산학협력처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단, 신청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10.,2021.09.13)

제9조(임용기간 및 재임용)(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임용은 산학협력 활동중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5.03.16., 2024.10.21)

② 지정형 전임교원 및 지정형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 중 근무성적과 산학협력실적이 우수한 자는 학과장 또는 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1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8.12.10.,2021.09.13)

③ 교무처장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의 재임용 기준에 따른 실적과 산학협력중점교원 재임용 평가표를 제출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채용형 전임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제8조의2(재임용기준)에 의하여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2개월전에 개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임용 기준)(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채용형전임교원은 임용기간동안 중소기업애로기술지도 10시간과 직전 2월 소속학과 졸업자(교양 및 행정부서, 졸업자가 없는 신설학과 등은 직전 2월 전체 졸업자 수의 학과 평균)수의 5%이상의 취업채용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애로기술지도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2월 소속학과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7% 이상의 취업채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취업채용 기준이 되는 수는 직전 2월 소속학과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취업채용 실적은 당해연도 2월, 8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익년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미래융합학부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취업채용 실적을 신입생 유치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03.16., 2022.04.08)

② 채용형전임교원의 강의평가 점수는 임용기간 중 재임용 평가 직전 3개 학기 중 2회 이상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3.16., 2017.10.25)

③ 채용형 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 평가표(별표2) 점수가 65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3.16.,2021.09.13.)

④ 지정형 전임교원 및 지정형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평가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항신설 2021.09.13.)

제9조의3(승진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절차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인사규정에 의하며 우리대학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3.08.07.)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용계약)(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채용형 전임교원 임용 계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개인별로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내역
3. 책임시간
4. 기타 필요한 계약사항

③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우리대학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업적평가)(조번호변경 2021.09.13.) 교무처장은 매학년도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산학협력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단,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신분보장)(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채용형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우리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임용취소 및 계약해지)(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계약기간 중이라도 법인 인사규정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 또는 이 법인의 각 기관을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학교 또는 법인의 금품을 횡령하였을 때(개정 2015.03.16.)
7. 성범죄 등으로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단,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5.03.16., 개정 2024.7.24)

8.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개정 2015.03.16.)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관련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휴직)(조번호변경 2021.09.13.) 채용형 전임교원은 임용 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15조(처우)(조번호변경 2021.09.13.) 채용형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준용)(조번호변경 2021.09.13.) 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법인 정관 및 우리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5> <생략>

<16>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③항, 8조 ②항, ③항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7>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6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사내규) <2021.8.18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제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생략)

<2>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현장실습(Co-op 포함)”을 “현장실습학기제”로 한다.

[별표2] 중 “co-op, 현장실습, 인턴십 지도”를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로 한다.

[별지1] 중 “현장실습(Co-op 포함)”을 “현장실습학기제”로 한다.

<3>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하되,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별표2>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0> (생략)

<11>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가산정기준]의 "진로취업지원팀"을 "진로취·창업팀"으로 변경한다.

<12> - <25>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 제9조의3)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별표2)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제7호)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1항)

② (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및 재임용 교원의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6> (생략)

<7>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4-2-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가 산정기준>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8> - <17> (생략)

[별표 1]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 및 연구, 산업체 경력에 따른 직급부여표

번 호	근 무 년 수	직 급	비 고
1	10년 ~ 20년미만	조 교 수	
2	20년 ~ 30년미만	부 교 수	
3	30년이상	교 수	

1.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은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를 기준 한다.
2. 동일기간 내에 둘 이상의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인정 환산율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인정하고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개정 2015.03.16., 2016.3.1.,2020.05.25., 2021.08.18.,2022.02.21.,2022.04.08., 2022.12.12.,2023.03.30.,2023.06.19.,2024.4.1)

산학협력중점교원 재임용 평가표

심사대상교수 소속 : 과 성명 :

분야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상한
강의 평정	강의진행	휴강 및 보강	20점-(무단결강 및 휴·보강 고지기준 미준수 일수× 10점)	20
		강의계획표 입력	20점 - [미입력과목 수 × 10점]	20
		성적 및 출석부 입력, 제출	20점 - 〔(미입력과목 수 + 미제출과목 수) × 10점〕	20
	강의평가	강의평가 점수	개인 강의평가 (임용기간 평균)	100
	직무역량	직무역량 교과목 강의	교과목 수(NCS기반, MJC기반) × 20점	40
산학 협력	산학협력 활동 및 지식재산권	산학협력체결	업체 수 X 20 점	140
		기술지도, 자문	건당 X 20점	
		산학협력 행사참여	건당 X 10점	
		창업	창업교수(연간 30점), 교내·외 경진대회 입상(1건당 20점), 창업동아리 지도교수(20점)	70
		연구비수혜 및 지식재산권	산정기준 참조	20
	인력양성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	(순회지도 업체 수 X 10점) + (지도 학생 수 X 5점)	100
		캡스톤디자인 지도	학생 수 X 5점	
		산학협력교육	건당 X 10점	
		사업훈련교육	수강 연인원 X 0.5점 / 강의시수 X 1점	
		주문식(맞춤형)교육	건당 X 10점	
	취업지도 실적	취업채용	산정기준 참조	200
		취업실적	산정기준 참조	200
		취업지도 활동	산정기준 참조	50
근무 평정	근무태도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산정기준 참조	
		교육관계 법령 준수	산정기준 참조	
		입학활동	산정기준 참조	10
		대학기여활동	산정기준 참조	10
	학습활동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	참 석 건 수 × 30점	

※ 미래융합학부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에 한하여 <취업지도 실적>을 <신입생 유치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평가산정기준 참조).

<평가 산정기준>

(신설 2015.03.16., 개정 2016.3.1., 2017.07.14., 2018.08.27. 2022.02.21., 2022.04.08.,2022.12.12.,2023.06.19.,2023.12.11.,2024.4.1)

1. 평가대상 기간

가. 근무평정 : 금회 계약기간

나. 강의평정 및 산학협력 : 전체 임용기간 중 재임용 평가직전 2개 학기

2. 강의평정

가. 강의진행

1) 휴강 및 보강 : 휴강 및 보강의 감점사항은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강의계획표 입력 : 학사지원팀에서 지정한 강의계획표 입력 마감일 이전에 입력된 것만 인정한다.(개정 2018.08.27)

3) 성적 및 출석부 입력, 제출

① 미입력 사항은 학사지원팀이 지정한 입력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08.27)

② 미제출사항은 출석부 및 성적표의 교무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강의평가

1) 강의평가 점수

① 강의평가는 학기별 계산하여 평균점수화한다.

② 개인평균평점 = ∑(강좌별 종합점수) / ∑(강의평가한 과목수)

③ 학사지원팀에서 시행하는 평가결과만 반영한다.(개정 2018.08.27.,2023.12.11)

다. 직무역량 :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하여 강의한 직무역량 교과목(NCS기반, MJC기반)의 수를 의미한다.(개정 2016.3.1.,2020.05.25., 2022.12.12)

3. 산학협력

가. 산학협력활동 및 지식재산권

1) 산학협력체결 :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가족회사로 등록시키고 산학협력이 있어야 한다.

2) 기술지도, 자문 : 산업체에 방문하여 애로기술지도, 자문 활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산학협력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날짜 활동은 1건으로 인정).(개정 2018.08.27)

3) 산학협력 행사참여 : 산학협력팀 자체행사 및 사업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개정 2018.08.27)

4) 창업

① 창업교수 : 교내 학과 전임교원이 창업한 경우

② 교내·외 경진대회 입상 : 지도하는 창업동아리가 교내·외 창업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입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 교내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로서 동아리활동 실적 및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비 수혜 및 지식재산권

① 연구비수혜

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한 것으로 우리대학에 입금된 연구비를 의미하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년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원하는 년도로 총액을 반영한다.

나. 연구비는 100만원 당 2점을 부여한다. 공동연구일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는 1/(n+1)을 인정한다.

② 지식재산권

가) 기술이전계약(10점 인정) : 기술이전 계약건수를 의미하며, 계약 건수당 점수를 인정한다.

※ 100만원당 1건으로 인정

나) 국제특허(20점 인정) : 해외 특허기관에 출원하여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다) 국내특허(15점 인정) : 국내에서 대학 혹은 해당교원의 명의로 획득한 특허로써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동일한 내용으로 국제특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 1건으로 인정한다.)

※ 디자인계열의 경우 국제특허와 국내특허를 포함하여 2건으로 제한한다.

라) 실용신안(10점 인정) : 국내에서 획득한 실용신안으로써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나. 인력양성

1)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

① 현장실습, 인턴십 파견업체로 실습생 현장지도 방문활동을 의미하며, 산학협력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7)

② 업체별로 진행되는 학생지도에 대하여 파견업체 발굴에 따른 점수와 업체별로 파견된 학생인원에 대한 점수를 각각 인정한다.

2) 캡스톤디자인지도 : 산업체와 연계하여 전공연구 또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한 경우 혹은 담당 캡스톤 디자인과정의 학생 수를 의미한다.

3) 산학협력교육 : 전문계고 또는 산업체와 연계한 정규과정이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재학생 또는 산업체, 전문계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

4) 사업훈련교육 :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사업의 훈련과정으로 유치한 강좌의 수강학생 수 및 강의시수를 의미한다. 단, 수강학생 수, 강의시수의 산정점수 중 큰 점수로 인정한다.(ex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향상 및 양성교육)

5) 주문식(맞춤형) 교육 : 주문식(맞춤형)교육 운영 트랙당 점수를 인정한다.

다. 취업지도실적

1) 취업지도실적은 본교 학생역량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교수 개인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실적에 따라 업적을 인정한다.

※ 졸업자 : 당해연도 2월, 8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 졸업예정자 : 익년도 2월 졸업예정자

2) 취업채용(개정 2022.06.08.)

-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규정 제9조의2 ①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200점을 인정한다.
- 추천하여 채용이 된 경우는 진로취·창업팀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실적에 대하여서만 산출기준에 따라 채용점수를 인정한다. [증빙자료 : 취업결과보고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취업실적

제9조의2 ①항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취업채용실적에 대하여 1명당 30점을 인정한다.

4) 취업지도 활동(개정 2022.06.08.)

① 학과 채용설명회 산업체 유치 : 교수가 산업체를 유치하여 학과채용설명회를 개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방문 실적 : 취업진로를 위한 산업체방문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진로취·창업팀에 산업체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7.)

③ 진로·취업동아리지도 : 교내 진로·취업동아리 지도교수로서 동아리활동 실적 및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06.19.)

<취업지도활동 실적 산출기준>(개정 2023.06.19.)

취업지도 활동	산출기준	비고
학과 채용설명회 산업체 유치	1건당 X 20점	
산업체 방문 실적	1건당 X 10점	
진로·취업동아리지도	1건당 X 20점	

라. 신입생 유치 실적(미래융합학부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에 한함) (신설 2022.04.08.)

1) 신입생 유치 실적은 교수 개인의 신입생 유치 실적에 따라 업적을 인정한다.

※ 신입생 : 임용기간 중 소속학과 신입생 전원(정원내+정원외+전공심화과정)

2) 신입생 유치

①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규정 제9조의2 ①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200점을 인정한다.

② 신입생 유치 기준인원 산출을 위한 필수 수행 비율은 취업채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산출된 기준값이 소수점 이하인 경우 올림하여 적용하고 대상은 임용기간 중 신입생으로 한다.

③ 추천하여 입학이 된 경우는 교무입학팀이 인정한 실적에 대하여서만 산출기준에 따라 채용점수를 인정한다. [증빙자료 : 입학원서 작성 시 추천교수명 입력]

3) 신입생 유치 실적(200점 상한)

제9조의2 ①항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신입생 유치 실적에 대하여 1명당 30점을 인정한다.

4) 신입생 유치 활동(50점 상한)

① 학과 입학설명회 유치 : 교수가 산업체, 기관, 단체를 유치하여 학과입학설명회를 개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기관 등 방문 실적 : 신입생 유치를 위한 산업체, 기관, 단체 방문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교무입학팀에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입생 유치활동 실적 산출기준>

신입생 유치 활동	산출기준	비고
학과 입학설명회 유치	1건당 X 20점	
산업체, 기관, 단체 방문 실적	1건당 X 10점	

4. 근무평정

가. 교수자질

1)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점수에서 감점한다.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 : -50점

②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 -30점

③ 벌금 등(회당) : -10점

2)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점수에서 감점한다.

① 형사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 -60점

② 정직 : -50점

③ 감봉 : -40점

④ 견책 : -30점

⑤ 경고(회당) : -20점

⑥ 주의(회당) : -10점

나. 근무태도

1) 입학활동(평점상한 10점)

① 입학감독 및 심사,진행위원 : 우리대학 입학전형기간 중 입시감독 및 심사위원, 진행위원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 하며 일당 10점으로 인정한다. [평생교육본부(계약학과) 포함](개정 2018.08.27.,2025.3.31)

② 입학홍보 활동 : 우리대학 및 학과 입학홍보를 위한 고교방문 활동 또는 교내·외의 입시설명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 한하며 건당 10점으로 인정한다. [평생교육본부(계약학과) 포함](개정 2018.08.27)

2) 대학기여활동(개정 2023.12.11.,2025.3.31)

① 대학발전 및 대외교류사업 참여 : 우리대학 발전 및 대외교류사업(사업계획서작성·발표, 국제교류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인정하고 건당 10점으로 최대 10점까지 인정한다.

② 산학협력처에서 지원받은 사업, 학과행사 및 회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0.)

다. 학습활동(신설 2016.3.1.)

교내 각종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건당 30점을 가점한다.

[별지 1] (개정 2021.08.18.)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원신청서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	
	직급		FAX	
	E-mail		휴대전화	
산학협력 활동계획	※작성참고사항 아래와 관련한 산학협력 활동계획 작성 1. 산학협력 교육활동 : 현장실습학기제, 취업연계, 학생창업지도 등 2. 산학협력봉사활동 : 산학협력업체(가족회사 포함) 유치 및 관리, 기술·경영자문 및 산업체 방문 등 3. 산학협력 연구활동 : 기술이전, 특허등록, 교원 창업 등 4. 학과별 산학협력 지원 및 기타 산학협력 활동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추천자 : (인)

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